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37

발의연월일: 2022. 11. 7.

발 의 자:소병훈·김승원·김정호

문정복・박 정・신정훈

오영환 · 용혜인 · 이학영

임종성 · 최기상 · 허 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되,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가 시중 물 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6조제4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규모, 실제 비용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
조 등의 지원) ① ~ ③ (생	조 등의 지원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	4
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	
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	
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	
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	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	
<후단 신설>	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
	체는 피해규모, 실제 비용, 물가
	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
	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하여야
	<u>한다.</u>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